

한국 가족윤리변천사 IV
-1950년 6·25동란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Korean Family Ethics
-from period of korean war: 1950's to the end of 1960's-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정덕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허식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Professor : Lee, Jeong-Deok
Dept. of Communication, Chung Joo Univ.
Professor : Park, Huh-Sik

(목 차)

I. 서론	IV. 1950년 6·25전쟁이후부터 1960년 말까지의 가족윤리
II. 전쟁과 가족윤리	V. 요약 및 결론
III. 6·25 전쟁과 가족윤리	참고문헌

<Abstract>

From the Korean War in 1950 to the end of the 1960s, the traditional feudal residue which had been prevalent in our society was disrupted and suddenly replaced with modern western order.

Family ethics were also to be changed, so that western family ethics replaced those of confucian ones.

This is part of a study that examines the flow of family ethics from ancient families to modern families to find out the stem of Korean family ethics. Since there are almost no existing studies that have dealt this topic, newspaper, magazine and also interviews with the people of thus era were very helpful to this study along with the related books and papers.

On account of limited space, this study focused in the first place on husband-wife ethics and parent-child ethics among family ethics.

I. 서 론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동양권의 여러나라 중에서도 유독 국가적 안정세가 뒤떨어지는 나라로서 이를테면 중국문화의 영향, 장구한 시일에 걸친 왜구 침략, 일본의 혹독한 압박 등 실로 국난이 연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문중제도, 상속제도, 관혼상제의 풍습 등의 독자적인 전통의 맥을 이어온 들판 나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가족도 동양 제국들과 같이 농경사회적 가족주의가 유교적 시대 배경 위에서 그때 그때의 특성에 따라 민감히 반응하면서 오늘의 산업사회를 맞았다.

산업사회의 가족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닌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오늘날의 한국 가정은 산업화 과정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그 형태 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과도기 가족적 양상을 크게 노정하고 있다.

〈1994년 세계가정의 해〉가 설정됨으로써 개최되었던 이에 따른 국내 기념세미나 및 학술대회 주제 모음집을 살펴보면, ① 가족의 현황, ② 가족 윤리, ③ 건강한 가족, ④ 가족과 지역사회, ⑤ 가정폭력, ⑥ 가정과 노인, ⑦ 가정과 자녀교육, ⑧ 가족과 방송 대중매체, ⑨ 미래의 가정, ⑩ 가족정책으로 분류되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정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학, 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분야에 의해 주로 진행되어 온 그간의 우리나라 '가족' 연구를 총괄해 볼 때 고대가족을 비롯 현대가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해방 50주년을 맞은 1995년의 연구 성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윤리사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의 대전체는 우리나라의 가족을 I. 고대가족으로부터 고려말기까지 (전통적 가족속에 불교가 가미된 가정문화기), II. 조선조 개국부터 일본 가정문화가 수입되기 이전인 1910년 까지 (유교가정문화기), III. 한일합방인 1910년 부터 8·15해방 및 6·25동란으

로 서구 가정문화가 도입되기 전까지(일본형 유교 가정 문화침투기), IV. 6·25동란으로 미국식 가정문화가 유입되어 한국 전통 가정문화가 해체되는 1960년대 말까지(전통적 가정문화 해체기), V. 농업중심의 산업구조가 해체되어 공업중심의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1970년대 초부터 산업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형 산업사회 가정형성기)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윤리를 통시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농경사회, 일제식민사회, 6·25동란전 전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배경에서 노정되어 온 우리나라 가족윤리의 맥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 한국가족윤리 변천사 IV는 이 연구 중의 한 성과이다.

1940년대초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에 의한 대동아 전쟁으로 조선반도는 전시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전분야가 전시동원체제에 있었다. 그 결과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나 전통 부정적인 자기 개혁적 가족윤리에로의 변동도 정체되어 30년대 중반 상황이 해방 이전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45년 8·15해방이후 1950년 6·25이전까지도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방이후의 사회적 모든 관심이 광복 이후의 정권수립을 둘러싸고 형성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치인들간의 첨예한 이해 갈등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진주하였고 이어 곧바로 설치된 미군정청에 의해 일제하의 조선민사령이 폐지됨에 따라 가족윤리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 마련되는 등 변화가 일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일반대중의 가족윤리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1950년까지 우리나라 가족윤리의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던 유교적 가족윤리가, 이질적 가치관의 대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도전과 응전 과정을 견디 뛴채 일시에 해체되어 미국식 서구 가족윤리에 자리를 내 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사회체제를 물질적·정신적 양면에서 철저히 파괴시켜 진공의 역사공간을 만든 6·25전쟁이었다고 하겠다.

6·25전쟁은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여

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문물은 물론 그들의 가족윤리는 전후 진공의 우리사회에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이 미국식 가족윤리는 일반민중에게 선진화된 가족윤리 또는 이상적 가족윤리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II. 전쟁과 가족윤리

전쟁과 가족윤리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희이론에 입각한 고대전쟁¹⁾과는 달리 대량살상의 근대전쟁은 인명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자연과 산업기반 및 전통적 기준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대량파괴적 근대전쟁은 과거의 역사와 정치·경제·문화·종교는 물론 인간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파괴와 한편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창조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기준성으로 보면 파괴행위이고 미래성으로 보면 창조행위인 전쟁은 사회변동에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모순적 행위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자기 모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겠다.

가족은 혈연공동체를 생명으로 한다. 인간비애중 가장 큰 비애는 가족구성원간의 분리이다. 그런데 전쟁은 가족성원간 흩어짐을 강요하고 이별과 사별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가족」의 관점에서 전쟁이 갖는 자기 모순적 기능은:

① 생존의 절대상황으로 인하여 윤리보다 생존을 우선케 하며, 과거의 가족윤리를 혁신적으로 해체시켜 현실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기능과

② 전쟁의 정당성에 앞서는 절대가치로서의 가족성원 그 자체를 파멸시키는 수단이라는 기능과의 상충성이다.

「가족」은 인륜(人倫)보다 우선하는 천륜(天倫)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일」의 기축원리인 합리성보다 「생명체」의 기축원리인 윤리성을 더 중시하는 천륜공동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학무기를 수단으로 한 근대전쟁은 윤리

적 가치보다 실용적 합리성을 정당화 시켰고, 이러한 실용적 요소로서의 전쟁도구가 지니는 과학성·합리성은 인간을 공동체적 가치중심의 농촌사회적 인간으로부터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과학 또는 합리 중심의 산업사회적 인간으로 변모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나이외 인간존재의 부정을 통한 자기자신의 긍정을 지향하는 광기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국가 대 국가간의 싸움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국가중심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전쟁이 지니고 있는 이 국가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동기에 있어 산업적 목적보다도 전쟁 목적에 더 지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중심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유화되고, 과학기술이 국유화되면 과학기술은 전쟁목적에 주로 동원되는 데 반해 과학기술이 사유화되면 과학 또한 평화적 목적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예가 구공산체제하에서의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체제하의 과학기술에 대한 20세기 후반의 실용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전쟁과 가족윤리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윤리성과 합리성간의 2중적 상충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가족이 지니고 있는 부모-자녀간의 서열적 천륜(天倫)과 부부간의 평등적 인륜(人倫)이라는 2중적 윤리와

② 전쟁이 지니고 있는 파괴와 창조라는 2중적 합리성간의 충돌이며

③ 전쟁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수단이며, 가족은 전쟁의 인적 공급처라는 관계성으로 인하여 가족윤리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은, 변동의 속도에서 보면 급격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 가족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논의는 여러 시각에서 고찰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1) 유희전쟁이란 대량의 인명 실상을 통한 정복에 목적을 둔 전쟁이 아니라 종족 또는 부족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비살상적인 놀이적 고대 전쟁을 말한다.

역사상의 전쟁이 가족윤리에 미친 영향의 일례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남녀 성인식에 끼친 영향에서 발견 할 수 있다.

본래 관례(冠禮: 남자)와 계례(笄禮: 여자)는 남자나이 스무살이 되고 여자나이 열다섯살이 되면 선생과 문중의 존장(尊長)과 친지들을 한자리에 모셔 놓고 성인이 되었음을 고하는 성인식이었다.

성인의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남자가 스무살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나면 호패(戶牌)라고 해서 성인임을 증명하는 패가 전달되며 성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그 행위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이 스무살이 넘어도 성인의식을 치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 취급을 받고 그들의 행위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말까지 하대(下待)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관례와 계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대 국난을 겪고 나서는 유야무야(有也無也) 그 명칭만 남고 시행된 일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양대 국난에 민족의 수는 반으로 줄었고 줄어든 수만큼 채우기 위해서는 다산(多產)이 필요했다. 다산을 위해 시행된 것이 조혼(早婚)으로 대부분의 남녀는 계례를 시행할 거를이 없었다. 조혼의 폐단은 후대에 올수록 극심해졌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규수와 어린 총각을 짹지어 다산을 모색했다. 그 제도가 후대에는 십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풍습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본래, 관례와 계례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을 뛰어 넘어서 임의로 다시 제정할 수도 없고 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해서 고안해 낸 것이 이러한 편법이다. 이 편법은 잘못을 변명하는 말로 일명 권도(權道)라는 말을 쓴다. 이 권도라는 말은 상도(常道)가 아닌 임시방편이란 뜻이다. 임시방편이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효력은 상도(常道)와 같다.

임시방편은 관례와 계례를 치루지 않고 바로 혼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인하는 날 아침 삼가례를 모두 생략하고 관례와 계례를 약식으로 행했던 것이다. 필요에 의해 성년의 나이는 지키지 못

해도 마련된 규정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한다는 유학(儒學)의 임시방편이었던 것이다(권오호, 1994, pp.120-121).

III. 6·25전쟁과 가족윤리

1950년 6·25전쟁이 갖는 세가지 특징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① 최초의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근대전쟁이었다는 점과 ② 남북한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소 강대국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충돌의 세계대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에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북에는 당시 중공군과 소련군이 참전하였으며 종전이 아니라 미완의 휴전 상태로 전쟁이 종식됨에 따라 ③ 6·25이후 남한에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수의 유엔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여 서구, 특히 미국 문화를 남한사회에 확산시켰다는 점 등이다.

6·25전쟁이 갖는 이와같은 특성은 사회변동에 있어 우리가 역사상 단 한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전쟁에 의한 문화적·정신적 정체성의 공황, 유엔군의 주둔에 의한 서구문화의 체험적 일상화, 전쟁으로 황폐화된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미국원조와 그에 수반된 미국문화의 유입 등은 동양 전통의 철저한 파괴, 다시 말하여 전후 복구라는 명분아래 우리는 숨들릴 여유없이 서양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전사회체제는 서구식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및 남북 대치하에서의 군사면에 대한 미국에의 의존도가 심화되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미국중심의 문화와 토착문화간의 갈등적 변증과정없이 전통적 규범문화는 구미적 상업문화로 대치되었고, 거의 항구적인 군사경제체제속에서 한국경제는 재정적 보급과 미국의 원조라는 2대지주(二大支柱)에 의하여 유지됨으로써 사회체제는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변동이 아니라 이질적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건설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회체제는:

① 원조의 80% 이상이 소비재 도입에 사용되었으며, 자금사용원칙에 있어서도 한국측은 건설재 7, 소비재 3이라는 비율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재정·금융·통화의 안정을 선결(先決)코자 건설재 3, 소비재 7이라는 비율을 주장하여 생산기반 없이 미국식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급격히 남한에 확대되었고

② 국제경제와 한국경제의 직결을 의미하는 500 대 1의 단일환률이 1955년 8월 15일 실시되면서 무역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세계로의 개방이 단행됨으로써(안립, 1981, pp.165-167) 우리 사회는 더욱 소비지향적 자본주의화 되어 갔다.

이와 같은 6·25 전쟁의 특성과 전후 복구과정에서 추구된 서구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체제개편은 가족윤리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즉 가장권과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족윤리에 관련된 주요변화중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래 촌락사회에 있어서 실체적 통제권자였던 문장(門長: 가문의 어른)·족장(族長)이나 가장의 권한이 현격히 감소되고 그 대신 가족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된 점이다.

일제식민시대와 6·25동란이 갖는 공통점은 타율성이라는 점이다. 즉,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강점한 것이었다면 6·25동란 또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2차대전 전승국들에 의한 한반도 분할과 전쟁 및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쓰라린 체험속에서 일반민중은 가정을 위한 봉건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가정, 즉 강력한 근대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가정을 위한 국가의 관점에서는 가정의 통제권이 가장에 일임되나 국가를 위한 가정의 관점에 서게 되면 가정의 통제권은 가정에 필요한 1차적 권한이외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가 가장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념으로는 자유와 개인존중으로 가족구성원을 접근하게 되고 기능적으로는 실용적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그 결과, 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 국가로, 목표는 천륜에 바탕을 둔 충효로부터 인륜에 바탕을 둔

국가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다(김두현, 1985, pp.609-611).

이처럼 6·25전쟁은 친족중심사회의 가정윤리를 국가중심사회의 가정윤리로 일대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가족윤리와 관련하여 6·25전쟁이 초래한 두 번째 중요현상은,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회현실에서 남편의 가족내 실권(實權)은 급격히 약화되고 아내의 실권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가정경제에 있어 주수입원이었던 남편을 가정에서 앗아간 6·25전쟁은 이제까지 남편에게 수입을 의존했던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의 책임자로 만들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가족의 부양을 떠맡아야 했던 여성들은 과거에 현모양처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 내몰았으며,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은 가족의 삶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밖에 없었다(노라·노, 「여원」, 1960년 3월호, p.113).

이러한 전쟁중의 가족에 대한 여성의 부양은 가정내에서의 여성실권을 크게 증대시킨 반면 남성의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부부평등 또는 부부중 가족부양 능력이 우세한 편으로 가족내 실권이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셋째, 가족형태의 변화도 6·25 동란이 가져 온 직접적 산물중 하나이다. 물론 직업의 세분화 내지 근대공업의 발달이 소가족제도를 촉진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피난생활이 준 영향이 더 커졌다. 전쟁은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생활의 주택난은 자연 부부단위의 별거(別居)를 촉진시켰고 이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도시적인 핵가족화는 농촌사회로까지 침투되었다.

넷째, 전쟁의 결과인 경제적 파탄은 가족윤리에 있어 유교적 예의보다 경제적 실용성을 더욱 중요시하도록 사회인식을 전환시켰다.

그 일례로, 이태영(李兌榮: 「여상」, pp.110-112)은 피난생활중 한 여성의 체험을 들고 있다. 피난생활 중 생전 처음 밥을 얻으러 나가 어느 집에서 밥 한

술 떠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에 뒤이어 밥을 얻으려 온 사람을 보니 다름아닌 시아주버님이어서 너무도 놀랍고 무안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이다. 일상 같으면 가장 어려워 할 시아주버님과 제수사이인 그들은 그러나 잠시후 모아온 밥을 펴놓고 한자리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그때는 이미 시아주버님과 제수사이에 부끄러움이 가셔졌더라는 것이다.

6·25전쟁이 가족윤리에 외형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가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 ① 우리나라 여성사회는 8·15이후 진주한 유엔군에 의해 지나치게 사치풍조가 불어 보는 사람의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으며, 경제적 빈곤화의 일 반 가정에서의 이러한 사치는 대개 생명처럼 고이 간직해야만 될 절개와의 교환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당시 여성들의 정조관에 대한 비판(「나절로」라는 필명의 「주부허영의 비극」, 1956, pp.140-143)과
- ② 1950년대 남편의 스트레스는 8·15이후의 급속한 가족제도의 변혁, 6·25로 인한 가정경제의 황폐화, 바다건너 들어온 외국문화의 소화불량, 산아 조절로 오는 정신적 불안감 등에서 주로 기인되었다는 최신해(崔臣海: 청량리 병원장, 1958, pp.108-109)의 지적 및
- ③ 6·25전쟁으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생활전반에 걸쳐 변화가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 가짐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지적(「가정의 벗」, 1969, p.9)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6·25전쟁은 우리나라 가족윤리에 있어 근대의 어느 사회적 사건보다도 강한 파괴력을 행사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면, 6·25가 우리나라 가족 윤리에 미친 영향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으며, 가족 윤리의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개인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라는 2중성을 지닌다. 전통적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였으며, 유교전통은 그 어느 종교보

다도 가족을 가장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는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했던 사회이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의한 근대사회는 가족보다 국가가 더 중시되는, 다시 말하여 개인에게 가정내 구성원으로서의 천륜적 도덕보다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더 요구하는 인륜적 사회이다. 이러한 인륜적 서구자본주의가 6·25동란이후 대량으로 직수입됨에 따라 우리 가정에도 천륜이 약화되고 인륜이 강화되는 변모를 가져 왔다.

이처럼, 1950년 6·25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는 제도나 생활양식에 있어 사회나 가정 모두 서구화가 급격히 확산되어 갔으나, 인간 심성은 이와 같은 사회적 서구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이와같은 특성을 박영신(1987, pp.275-278)은,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적 근대화와 산업화는 '가족중심의 전통의식'과 '합리적인 근대의식'의 모순이나 대립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가족의 이익과 복리를 지향하는 전통적 가치에 산업화라는 물질적 풍요의 약속이 어울려 서로 강화시킨 데서 얻어진 특유의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6·25이후 서구화라는 사회변동이 주는 압력 때문에 삶과 환경이 바뀌면서 가족의 크기도 핵가족의 형식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래의 가족중심적인 가치에 이어진 발상과 인식의 틀은 그대로 존속해 개인의 행위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가족의 이익을 내세우는 가치의 틀속에서 경제적 생산을 높여줄 능률과 효율성은 심각한 갈등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으며, 「우리집안이 잘 살아야 한다」는 성공과 복지를 지향하는 가치가 물질적 풍요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화의 출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심성을 지닌 세대들이, 삶과 환경에서 모방적 서구가족윤리를 민중중심적으로 세속화시켜 갔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러면,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IV. 1950년 6·25전쟁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가족윤리

이시기 가족윤리의 변동은 서구가족윤리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 자본주의 사상과 이의 사회화인 제도로서의 가족윤리를 분리시켜, 서구가족윤리 본질로서의 기독교적 자본주의 사상보다는 이의 제도화된 세속적 가족윤리에 치중하였음을 두 말할 나위없다. 서구가족윤리의 한국화는 바로 가족윤리의 내면성과 제도를 분리시킨 분절(分節)화 과정이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미국중심의 서구가족윤리는 6·25전쟁이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분절되어 확산되어 갔는가?

1. 부부윤리

1) 사회적 담론

8·15해방과 6·25동란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은 부부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방향을 일제하의 담론이었던 「남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가정에서의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변모시켰다. 부부윤리에 대한 담론은 가정내에서의 차별적 부부윤리가 상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처럼 가정에서의 진정한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로 사회적 담론이 변화하게 된 것은 전후 여성들의 부부윤리에 대한 평등의식이, 인격중심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물질중심인 동시에 성해방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부부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탈가정적 여성해방으로 인하여 수반된 전후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남성들의 비판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 ① 54년 4월 14일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해방전만 하더라도 공창(公娼)이나 사창(私娼)은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화사한 의상과 세련된 화장을 하였으나, 전후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치와 서구적 자유연애 풍조가 만연됨에 따라 성관계가 문란해져 여성윤락이 주택가까지 확산되었

으며, 그들은 해방전의 공창이나 사창들과는 달리 천편 일률적으로 여학생복을 입고 남성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사설은 「(과거의) 탕자(蕩子)들은 여성의 순결에 매력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순결이 고도로 절조화(節操化)한 인격에 대해서는 자기의 무절조(無節操)한 타락을 분식(粉飾)하려 들거나 자신의 흠결(欠缺)을 엄폐하였으며, 순결한 여학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네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참회적 원망(願望)」까지 지니고 있었는데 「요즈음 치한 불량배는 직업적인 접대부의 화려한 치장이나 영색(令色)보다는 여학생의 소박(素朴)과 순결과 가련함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뭇남성들이 「모든 여성의 순결은 유린되어도 좋다는 일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하고 한탄하고 있다. 이 사설은 이어, 그 해결방법으로 정부고관, 졸부상인, 외교가적 교육자들 자신은 물론 그 가정에서부터 사치와 허영, 부화(浮華)한 유행 특히 사교댄스 등을 엄금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해방이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당시 여성들의 잘못된 여성해방관을 비판하고 있으며

- ② 여성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사회전체를 명랑하게, 그리고 이 사회를 좀 더 살기좋은 사회로 이끌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외는 반대로 한갓 허영과 유행에 빠져 오직 눈앞에 띄는 하찮은 사치와 향락에만 젖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나다니는 사람이 소위 부유층이나 유품층에 차츰 그 수효가 늘어가고 있으며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건전한 전진없이 들떠 다니는 것은 현대화도 아니고 해방도 아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1954년 12월 8일자 한국일보 사설(「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도 여성해방의 잘못된 당시 인식을 지적하고 있고

- ③ 「오늘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을 몇마디로서 설명하자면 완전한 성생활이 없는 감정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1960년 프랑스 「에스프리」지(誌)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이다. 한국도 해방을 계기로 서구 문명이 급속도로 침투되자 닫혔던 성(性)의 문이 널리 열렸으며, 6·25동란이후에는 전후 파격적인 섹스의 범람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성범람

은 60년대초에 이르러 새로운 성윤리를 모색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지적(『여원』, 성의식 특별조사, 1961. 3, pp.130-131)과

- ④ 여성에게 주어진 조물주의 선물은 「아름다움」
그것인데 근대(50년대말)에 이르러 그들은 이 천혜(天惠)의 여성적인 미를 내던져 버리고 마치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함부로 날뛰며 체면도, 예절도, 윤리도 모두 고루한 옛사상이라고 내어 던 진체 기고만장하다는 것이다. 입술은 소녀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빨갛게 칠하고 검게 윤이 나는 아름다운 머리엔 빨간 염색을 하며 속눈썹을 붙이는 등 서구식 품치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을 그들은 현대감각에 알맞는 미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잡한 도장(塗裝)에 불과하며, 소위 반처녀와 놀아난 부인의 보편화, 여기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는 소란해져서 현대인의 비극은 초래된다는 정도선(鄭道善: 1960, p.95)의 50년대말 여성에 대한 비판,
- ⑤ 「오늘날(1960년대 중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남성들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여성들 이상으로 서구숭배의 사대주의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 해방후 미군과 더불어 밀려 들어온 민주주의 풍조는 구세주와 같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임시적 방관태도는 마침내 남종여필(男從女必)의 방종으로까지 흐르고 있다.」는 김윤성(金潤成)의 언급(1965, 2월호, 『여상』, p.137)
- ⑥ 그리고, 6·25와 1·4후퇴, 그리고 수도 환도를 거치면서 여성사회에서 급격한 남성화가 이루어 졌으며, 여성의 남성화는 웃차림과 말씨의 남성화, 출산거부, 수치심의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고 양주동(梁柱東)은 회고(『여원』, 1958, 1월호, pp.81-82)하고 있다.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이와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성해방을 외모에서는 서양화, 경제에서는 부부간 독립, 사생활에서는 부부간 불간섭주의를 더욱 추구하고 있다. 가정이라는 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생활의 일체를 포함한 것이라고 임어당(林語當)은 말하고 있다. 생활관계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집은 우리의 생활기점이요 종착지이며 또한 안식처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식처를 갈망하며 그 안식처의 안정과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안식처의 행·불행, 밝고 어

둠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빛을 끌어 들이는 창(窓)이며, 이 창이 바로 그 집의 주부라고 손소희(孫素熙)는 말하고 있다(1963, 4월호, 『가정생활』, p.34).

이와같은 손소희의 「안식처의 창」 이론은 가정에 대한 여성의 살림주권론으로 발전되고 있으며(1960년 7월호, 『명랑』, p.270) 이 살림주권론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곧 인격적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현실적 방법이라는 경제적 부부평등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경제적 부부평등론의 논거는:

- ① 인간혁명이 외쳐지고 모든 정신적 사고방식, 생태(生態)가 뿌리로부터 격동을 일으킨 시대이고 보니 물론 「남편혁명」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아내혁명」이다. 결혼 또는 부부생활이란 남녀가 하나되어 함께 사는 것이라면 부인이 남편에게만 모든 수입을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편이 실직하면 아내가,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남편이 일을 하는 식으로 서로 함께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1961, 8월호, 『가정생활』, p.95). 다시 말하여 남편의 존재에 대한 여성들의 가정경제적 재인식에 의한 경제공동책임론과
- ② 헌법 제9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형식적인 남녀평등으로 말하면 현재(1960년대초) 우리나라는 나무랄 테 없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남녀차별이 염존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윤리는 가부장적 차별윤리가 상존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차별적 부부관계가 시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제력을 지닐 때만 가능하며 지금도 부부가 다같이 직장에 나감으로써 생계가 유지되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발언권이 남편 못지 않게 강대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와같은 논거 위에서 전개된 여성들의 기존 부부윤리에 대한 비판적 사회담론은:

- ① 남녀평등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참되게 자라나듯이 아내를 위한 착실한 이해와 존경 그리고 인격의 융합없이 아름답고 순결한 가정의 민주화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가정의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도 민주주의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정일형, 「여원」, 1958, 3월호, pp.70-71)

- ② 민주국가는 한 부부를 성원단위(成員單位)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녀를 1: 1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다시 말하여 민주주의는 남녀, 남편과 아내를 동일가치로 보는 주의(主義)이므로 독립된 가치로 이루어진 가정, 이러한 가정으로 구성된 국가, 이것이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에 있어서는 부부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다(박순천, 「여원」, 1960년, 8월호, pp.86-87).

60년대초 지식인 여성들의 부부평등, 또는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담론이 어느 정도로 (자아발전이라 치칭되어) 개인화되고 있었느냐는 전혜린(田惠麟)의 「이상적 부부상」과 이에 대한 이효재(李効再)의 비판에 잘 나타나 있다.

전혜린(1962, pp.385-386)은, 결혼이란 부부라는 두 이성이 동격적(同格的) 가치의 수준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두 개성의 발전과 완성을 함께 완수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상적 부부의 궁극적 목적은 각자가 서로 상대방의 자아발전을 도와 주는 데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녀 양성(兩性)속에서 똑같이 육체와 정신, 유한성과 초월의 회복이 연출된다. 남녀 모두가 시간에 의해 침해되고 죽음에 의해서 대기되어 있고, 또 그들의 자유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끌어낼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이다. 반드시 남녀가 실질적인 대등을 완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남녀 양성간에는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애정적인 관계가 생겨 날 것이다. 똑같이 개개의 목표를 향해서 각기 자기를 초월하는 일에 종사하고 직업을 통해서 변화나 진보와 접하고 시간을 통해서 자기해방을 체험한 후 자기 해방에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정에 돌아와서 두 남녀가 만나는 경우 특이한 성적인 우정과 공범(共犯)관계를 맛보게 될 것이다. 똑같이 일하고 피곤하고 자기확립의 흔적을 세우는 생활은 포옹이나 황홀한 정열보다도 더 굳게 두 남녀를 맺어준다.」

이와 같은 전혜린의 「이상적 부부상」은 현대 개인주의 사상의 극치라고 이효재(1983, pp.242-244)는 비판하고 있다. 즉, 결혼생활의 중요성이 개인의 내

적 성장과 완성으로 집중하게 되면 결혼생활의 객관적 조건의 중요성은 상실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아실현 또는 인격완성 등을 점점 더 절실히 중요한 생의 문제로 파악한다. 사회를 자아완성의 광장과 수단으로 보게 되며, 가정생활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 보기 쉽게 된다. 현대인의 부부관계는 통속적으로 규정하는 가치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인은 객관적 조건의 구비보다 내용적 충실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적 충실은 사회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공동목표를 지니고 함께 노력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그 자체를 자아충실과 완성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효재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혜린은 결혼생활의 목표를 부부 각자로 개별화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부부간에 지난 공동목표는 「부부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행동하며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되어 사회나 가정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공동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개인의 완성은 자아중심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이상이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 중심에 있다는 것이 이효재의 주장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가치가 개인의 완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개인의 이상과 가치관은 그의 개성을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완성시키는 데 관련지어야 한다.

부부를 관계적 측면에서 연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부(夫)와 부(婦)를 분리시켜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분리된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부부의 목표가 개별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부 개개인의 행복은 부부의 공동목표이며 연대적 책임감이 곧 부부관계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효재는 전혜린의 부부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6·25동란이후부터 1960년대말 미국중심의 서구 가족윤리가 확산되던 시기의 부부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특성은:

- ① 「가정에서의 여성억압」은 부차적 과제로, 「가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이 담론의 주요과제로 등장

하였으며

②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사회에로의 털출이 곧 여성해방인 것처럼 잘못인식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비판론을, 여성들은 사회현실에는 부부윤리에 관한 한 봉건적 잔재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 보다 철저한 여성 해방을 강조하였고

③ 서구적 사치와 허영을 현대화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유로이 집밖에 나들아 다니는 것을 해방으로 여성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해방」이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정당한 권리회복」이라고 남성들은 주장하고 있다.

④ 반면에,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여성 살림주권론, 남편존재의 재인식을 통한 가정경제의 공동책임론, 정치적 민주주의와 가정민주주의간의 관계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부부평등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⑤ 경제적 독립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정내에서 실질적인 부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 경제적 능력을 가정내 주권으로 여성들은 담론하고 있다.

⑥ 부부간 상호불간섭과 경제적 실권의 공유화를 부부평등으로 인식했던 일반 민중적 담론에 반발하여 일부 여성지식인들은 「자아발전」에 입각한 부부관, 즉 이상적 부부관계란 서로 상대방의 자아발전을 도와주는 데 있다는 개인화된 부부상을 담론으로 제출하였다.

2) 사회적 윤리실상

해방이후 가족제도에 관한 법률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친족상속법이다. 1948년 헌법제정 당시 친족상속법의 입법방침은, 현행 친족상속관습법중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최대한 유지하되 시세(時勢)에 맞지 않는 인습은 고쳐 민족의 발전과 국운의 흥흉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입법방침중 부부윤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조항은:

① 호주권·친권·부권(夫權)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자치의 범위를 확대할 것.

② 가족제도의 미풍을 근본으로 파괴치 않는 한 도내에서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두 조항이다.²⁾

이 입법방침에서 보듯이 1948년 제정된 친족상속법은 일제하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관습법을 모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法源)의 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 관습 법원(法源)을 탈피하여 개인존중·평등·민주라는 서구적 이념이 법원(法源)으로 채택된 것은 1957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민법(新民法)이다.

신민법은 본조문 총 1,101개조, 부칙 28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전문(前文)에서 신(神)의 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밝힘으로써 20세기 후반 서구 선진국 사법(司法)상의 지도원리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조정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법에 있어서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개인 존중」과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조선 오백년 아래의 구관습에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민법은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하여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부부윤리는 물론 가족윤리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하겠다. 부부윤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부별산재(夫婦別產制)의 도입

우리나라 구관습법은 부부의 고유재산은 혼인후에도 그 소유관계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인 재산으로 인정하나 부(夫)가 처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공동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처는 자기고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독립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남편이 이를 사용, 수익하게 되어 처의 재산상의 지위는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은,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혼인생활중의 사용·수익권까지도 각자가 이를 행사하는

2)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편, 「민법안심의자료집」, 장경근(張暉根)의원의 제안.

소위 부부별산제(夫婦別產制)를 법정재산제로 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산계약제³⁾도 인정함으로써 부부간 재산상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였다.

②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가 법률 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새 민법은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가 일상가사가 아닌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채무를 자기 명의로 부탁한 때는 남편에게 연대책임이 없다.

③ 생활비의 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새 민법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과 같이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구관습법에 따르고 있어 여성의 사회현실, 즉 사회에서 아직도 직업상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성의 자녀양육이 지나고 있는 활동상의 제약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④ 재산상 거래행위에 대한 부부동등권

관습법에서는 남편의 동의없이 처는 제3자와 재산상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민법에서는 처의 무능력 규정을 삭제하여 처도 남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재산상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여호주제(女戶主制)의 도입

구관습상에서도 여호주제를 인정하였으나 세수(世數)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새 민법상에서는 정규의 여호주제가 확립되었다.

⑥ 입부(入夫)혼인제도의 채택

남자가 처의 집으로 장가드는 입부혼인제가 법률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출생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

을 따를 수 있는 모계가족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부혼인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성(姓)에 있어서의 부부평등권에 대한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은 새 민법상의 부부윤리 관련 법률에 있어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부우선주의(夫優先主義)는 부부차별의 대표적 문제로 여성계에서 논란되었다.

가족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윤리가 사회현실에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가족윤리는 법률보다 관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8·15와 6·25로 인해 서구가족윤리가 급격하게 확산된 시기였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기성세대는 전통적 관습이 상존하고 있었던 192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들이었고, 관습은 세대교체를 통하여 완만하게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관습의 측면에서 신구세대가 중복되는 전환기적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 시기 부부윤리는 계층간·지역 간에 전통적 관습과 서구적 윤리가 혼재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실증적 자료로서:

① 1890년대부터 사회 문제화된 축첩이 해방 이후 해마다 줄어 들고는 있으나 1957년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도 지방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간 격차가 현격하다는 점(한국일보, 1958. 11. 3. 「1957년도 인구동태 백서」)

② 한국일보가 1954년 5월 10일부터 개소(開所)한 「여성문제 상의소」에서 1954년 9월 말까지 상담한 81명을 내용 분석한 결과 상담자의 90%가 기혼자이

3) 부부재산계약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계속중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재산제와는 상이한 재산관계를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 재산계약이 있으면,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 예를 들면, 새 민법은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전에 남편이 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권을 행사하기로 계약하면, 혼인후에 남편이 처의 재산에 대하여 수익권을 갖게 된다.

며, 이중 40%가 남편의 축첩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한국일보, 1954. 11. 29, 「주부의 고민은 무엇… 축첩 문제가 대부분」)

③ 1961년 당시 이혼 풍조는 도시나 지식층에서는 급증하고 있지만 농촌이나 가난한 영세민들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朴彬, 「명랑」, 1961. 3, p.153)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조경희(趙敬姬)는 60년 대초 당시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아직도 봉건적 체취가 무력무력 나며 개개인의 행동에서는 비민주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가정생활」, 1961. 8, p.19).

또한, 이시기 부부 차별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또다른 실증적 예로는 우리 나라 사법사상 「간통 쌍벌죄」 기소 제1호에 대한 1954년 5월 15일 법원 판결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기소된 「쌍벌간통죄」 고소사건의 법원 판결에 반영된 당시 부부평등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소된 사건 개요>

고소인 현순원(玄順元, 30세) 여사와 피고소인 한위동(韓偉東, 37세)씨는 1945년 2월 8일 서울에서 결혼한 다음, 한(韓)씨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중국으로 들어가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혼여사는 1946년 시부모 및 시집 식구와 본국으로 돌아옴. 귀국 후 2년이 지난 48년 시부가 돌아가시자 한씨도 중국에서 귀국하였음. 이후 두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별거를 하던 중 혼여사는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한씨는 군(軍)에서 근무하였다 함.

별거생활 중 한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미국인이 경영하는 태평양고철주식회사의 타이피스트 장인혜(張仁惠, 23세)양과 결혼을 약속, 1952년 6월 부산에서 약혼을 하였음. 마침 1953년 10월 3일을 기하여 신형법이 실시되어 법적으로 이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은 간통 쌍벌죄에 해당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는 장양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여서 신형법 실시 이후인 53년 10월 23일 부산에서 결혼을 하였음.

이 사실을 안 혼여사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쌍방의 선처 방법을 타협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되었음. 쌍방간에 타협을 보지 못하자 남편인 한씨가 본처인 혼여사를 걸어 「직무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였음. 그러자 혼씨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음. 서울 수복 후 본처인 혼여사는 「위자료 5백만원을 내라」는 조건으로 남편을 걸어 이혼소송을 제기, 동 사건을 심의하던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임을 알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옮겨 병합 심리를 하게 되었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본처는 또다시 서울 지방검찰청에 간통 쌍벌죄를 근거로 남편과 혼여사를 고소 하였음. 이를 담당한 이영호(李永鎬)검사는 고소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한씨와 혼여사를 쌍벌간통죄로 기소하였음.

<판결 결과>

공소기각

<기각 사유>

간통쌍벌죄가 재산 청구의 도구로 화할 수 없으며, 법률상 문제로서는 간통에 대한 사전 종용. 즉 본처가 남편에게 재혼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없다.

사전 종용의 증거로서는:

- ① 8년간이나 본 남편과 떨어져 산 본처가 중간에 남편의 승낙도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이나 통학하고 있는 사실
- ② 자기의 가재도구를 시가에서 가져간 사실
- ③ 위자료 2천만원(구화폐단위)을 청구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동거할 의사가 없는 것이며, 아울러 남편이 재혼하는 사실을 목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처가 「종용」한 효력은 신형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

속되는 것으로 이미 동 사건은 공소권이 소멸되었다.

<본 사건 판결내용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

- ① 간통 쌍벌죄는 법제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가정제도의 혁명이라고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 ② 제1호로 기소된 간통 쌍벌죄가 법원에 의해 공소기각(무죄와 다름없음) 되자 법조계에서는 「간통 쌍벌죄」의 존재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
- ③ 사회 일반에서는 가정생활 위협의 일부가 제거되었다고 평하였다.
- ④ 이렇듯 역사적인 사건의 공판은 54년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편영완(片永完) 판사에 의하여 언도되었는데, 법정은 동 판결의 결과를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경향신문, 1954. 4. 16, 「기소된 간통쌍벌1호」; 경향신문 1954. 5. 16, 「쌍벌죄 제1호 깨지다」).

신형법 제정시부터 간통 쌍벌죄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일었으며, 동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여성들이었고, 이 사건이 공소기각 되자 남성들은 가정생활의 위협중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는 사실과 공소기각 사유중 「간통 쌍벌죄는 재산 청구의 도구로 될 수 없다」는 요지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의 남편과 청을 대상으로 간통 쌍벌죄를 고소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 간통죄를 제소할 수 없게 법이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 부부간 윤리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서구적 부부 윤리인 평등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관습적 내용이 상당 부분 현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재판상의 판결은 1957년 7월 12일 서울 지방법원 이남규(李南珪)판사에 의해서도 판례로서 누적된다. 본 사건은 위 사건과는 달리 축첩 간통에 대한 사건이다.

<기소 요지>

서울 시내 명륜동 3가 5의 9에 사는 황화윤(黃華潤, 40세)씨와 그의 청 정실자(鄭實子, 37세)씨가 피고이며, 황씨의 본 부인인 박석동(朴石東)씨가 고소인으로서, 황씨와 박씨는 1936년 9월에 결혼하여 함께 살아오던 중 1947년 황씨가 정실자씨를 청으로 들어 현재까지 간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황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기소후 재판소에서는 즉시 황씨를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였다. 황씨와 박씨(본처) 사이에는 딸 둘을 두었으며 1942년 가정 불화로 양인이 별거하게 되자 황씨는 1947년 정씨를 청으로 삼아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들 부부 사이에는 2남1녀를 두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다.

<재판 결과>

공소기각

<기각 사유>

- ① 10여년간 테리고 살고 있는 청에 대한 남편의 행 동은 이미 본처가 그 「간통행위」를 유서(宥恕: 상대방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한 것이며
- ②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宥恕)나 종용(從容)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간통죄에 있어 「공소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57. 7. 13, 「축첩 간통에 첫 판례, 이미 공소권 상실-종용·유서로 기각 판결」).

한편, 6·25전쟁이 조성한 새로운 사회 조건들이 부부관계에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 새로운 현실적 조건은 결혼연령을 조혼풍조로부터 만혼(晚婚)풍조로, 제1의 결혼조건을 애정으로부터 경제능력으로, 부녀(婦德)을 내면적 심성으로부터 외양적 미모로 변모시켰다.

부부관계의 양식이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일까? 이에 대해, 성인기(成仁基)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6·25 전쟁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전사하여 전후 총각 1명에 처녀 두트럭 반이니 세트럭 반이니 하는 풍자적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결혼 적령기의 남녀 성비 균형이 깨졌다.

결혼이란 대개 신랑될 사람의 가정이나 신부될 사람의 가정이 서로 모든 점에서 비슷해야 성립되기 쉬운 법인데 수가 적은 총각들이 눈이 높아져 자기의 형편보다 훨씬 나은 가정의 색시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한편, 딸을 둔 가정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적당한 상대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기까지는 적합한 신랑감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혼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재산이 잿더미가 된 가정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경제적 관계이다. 대가족제도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에는 결혼 후 처자를 벌어 먹일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에 의지하여 살아 왔으나 6·25 이후는 이와 같은 대가족제도가 해체되어 부양 능력이 없으면 남자의 경우 결혼할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셋째, 해방후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경향(京鄉: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땅을 가지고 있던 양반 지주층의 생활은 거의 몰락되고 종래에 천인(賤人) 직업이었던 공장을 가졌거나 장사를 해 왔거나 기업을 운영해 온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부는 해방 이후 양반과 상민 사이에 역전되었으며 이어 발발한 6·25로 인하여 양반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신분마저도 과괴되었다. 이렇게 경제적 신분이 뒤바뀌게 되고 결혼에서 경제적 부(富)가 중요시되자 가문을 중시했던 양반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 양반 중에서, 상민 출신의 신흥 실업가나 부자들은 양반가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여 결혼에 어려움이 많아 남녀 할 것 없이 결혼이 늦어지게 되었다.

넷째, 교육기간의 연장과 병역의무로 인한 문제이다. 혼기를 놓치고 고민하는 남녀들 중 대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6·25 이후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

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남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25세~26세가 되고, 특히 남자는 병역의무 3년을 더하여 실제로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나이는 27~29세가 된다. 따라서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는 28~29세 이후에,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5~26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취직난·생활난을 들 수 있다. 6·25는 대가족제도를 해가족화시켜 분가제도를 확산시켰고, 분가제도가 확산된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후 부양의무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농업 사회구조였으며, 일제하에서 건설된 산업시설마저도 6·25 전쟁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취직난과 생활난은 모든 국민이 당면한 현실적, 절대적 과제였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결혼관이 애정보다 생활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모되었다.

여섯째, 서구 문물이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사치와 허영심이 만연되어 부덕의 기준이 내면적 심성의 아름다움보다 서구적 외양과 외면적 미모로 바뀌었다(성인기, 「여원」, 1958. 1, pp.78-81; '총각 덤펑 시대는 오다!', 「명랑」, 1959. 12, pp.111-112).

이와 같은 결혼 경향의 변화로 인해 이 시기 부부 관계는:

- ① 경제력이 없는 남자는 아내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어 실질적 가장권이 여성에게로 옮겨지는 등 일반 대중사회에서 여성의 가정내 지위는 향상되었고, 남성의 지위는 약화되었으며,
- ② 만혼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결혼 당사자들은 부부의 관계를 이상론인 「사랑」보다 현실론인 가족 부양능력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 ③ 배우자의 요건으로 외모가 중요시됨으로써 부부 간의 윤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가치로부터 외형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가치로 변모되었으며
- ④ 이로 인하여 남녀 모두 사치와 허영에 휩싸여 성에 대한 순결을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1955년 9월 1일 현재, 30세에서 40세사이 결혼률이 남자 91.6%, 여자

90.5%로 반영되고 있으며(동아일보, 1957. 9. 17. 「현저한 만혼의 경향」), 이 시기 사회적 담론은 당시의 부부 윤리 실상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담론 내용 그 자체가 이 시기의 부부 윤리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1950년대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부부 윤리 실상은:

첫째, 6·25전쟁 참전으로 인한 일시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영구적 남편 부재로 인하여 가족부양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전후(戰後)부터 부(婦)의 가족내 지배권이 부(夫)의 지배권과 동등해 지거나 남편이 부양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성의 실질적 가장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둘째, 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이 해이해지고 서구 문물이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부간 정조 의무가 절대적 윤리에서 상대적 윤리로 변모되어 가기 시작했고

셋째, 서구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급격히 유입되고 교육이 대중화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공허에 의하여 향락주의와 사치가 만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억압 장치가 소멸되자 이 시기 일반 여성들은 부부 윤리를 가정으로부터의 여성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일반 남성들은 부부 윤리를 가정내 인격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넷째, 도시지역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서구적 부부평등 윤리가 확산되어 간 데 반하여 농촌지역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전통적 부부 윤리가 상존하였으며, 청소년 젊은 층의 경우는 농촌과 도시,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부부 평등을 선호하였는데, 이 경우 특이한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2. 부모-자녀간 윤리

전통적인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는 부계가족제도(父系家族制度)였으며, 가장권(家長權) · 가산(家產) 그리고 조상을 봉사(奉祀)하는 제사(祭祀)가 아버

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 · 계승되는 부자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됨과 동시에 이러한 가족제도속에서 부모-자녀간 윤리는 생성되었다 것이다.

부계가족제도하에서의 부자(父子)관계는 이처럼 가족 제도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부자(父子)관계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인간 관계가 아니라 자연적인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며, 이러한 인간관계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부자관계가 정립(正立)되지 못하고는 가족내의 인간관계나 사회내의 인간관계 그 어느 것도 올바르게 설 수 없다고 본 것이 전통적 사고(思考)였다.

혈연으로 결부된 인간관계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가족 관계에서 혈연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처는 인위적 관계자이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는 혈연관계에 있게 된다. 부계 가부장제도하에서는 이와 같은 처의 비혈연성과 딸의 출가(출가)제도로 인하여 부자(父子)관계 중심의 가족 윤리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전통적 가족윤리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자(父子) 관계는 주고 받음이라는 수수(授受)관계에서 볼 때, 형제 관계는 동일한 부모로부터 혈육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대등한 관계가 되지만 부자 관계는 준 자(父)와 받은 자(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등할 수 없다. 줌에 대한 감사는 인간 윤리의 근본이다. 줌의 대상이 물건이 아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혈육과 생명이며, 양육하여 인간답게 만들어 줌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줌이라는 데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자신의 생명을 다비쳐서 보답해야 할 은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思惟)하에서 형성된 것이 전통적 효(孝) 사상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의심할 바 없는 절대적 또는 천륜의 근본으로 생각되어 온 효 중심의 부모-자녀간 윤리가 담론의 대상이 된 것은 서구사상이 유입되고 정치 · 경제적 봉건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880년대 이후부터이며 효의 주체적 실천적 대상인 「자식」이 가족이라는 틀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라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국가 · 사회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억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대두시켰으며, 인구 억제는 가정에서 자녀 출산억제로 이어졌고 자녀의 수는 곧 부모의 크나큰 부담으로 인식되었으며, 산아 제한은 인간 존재를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바꾼 인륜상, 철학상 대사건이었다. 즉, 부모-자녀간 관계는 더 이상 천륜의 관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과 인륜이 혼재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시기 부모-자녀 윤리담론은 이제까지의 담론과는 달리 천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륜적 관점 하에서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 가족윤리 담론사상 일대 혁명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러면, 인륜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50년대초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부모-자녀간 윤리의 사회적 담론 내용은 어떠했는가?

1) 사회적 담론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담론

18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부부 평등 사상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가부장권은 급격히 몰락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들이켜 보면 1950년대 말까지 가족 윤리 담론은 아내와 자녀 중심의 담론이었다. 이러한 담론의 논리적 모순을 조병화(趙炳華 : 「가정 생활」, 1963년 1월호, pp.36-37)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아버지'에 관한 연구나 기사·논평은 '어머니'에 관한 것에 비하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맹점(盲點)에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나 여성에 대해서만 이러니 저러니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사회란 아무래도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남성은 모든 의미의 불리한 부분은 눈에 띠지 않게 숨겨둘 수 있다는 특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문제'도 이런 것 중의 하나이다.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아버지 족속들은 사실상 강력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마땅히 요구되는 점이 진지하게 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아버지 자신은 맹점(盲點)에다 그냥 놓아두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부부 관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등을 아무리 논해 보아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없다.」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족윤리에 대한 담론은 아버지를 맹점(盲點)에다 두고 부부·어머니와 자녀·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등을 논의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조병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를 양친(兩親)과 자식의 관계 책임론의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다. 양친과 자식의 관계는 혈연적으로는 물론 일생 동안 변함이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양친과 자식 관계는 사회적으로 보면 한시적 관계, 즉 자신이 새가정을 이루기 전까지의 한시적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관계, 부자 관계라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 윤리이다. 자기가 난 자식에 대한 책임, 즉 자식이 성장해서 성인(成人)이 될 때까지 조금씩 덜어 가는 책임이며, 이것이 가정교육이다.

그런데 자식을 기른다는 것-가정교육-은 양친 자신이 스스로 육성(育成)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권위주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육성을 통한 자녀 교육이 되지 못하고 권위에 의한 자녀 교육을 함으로써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잊고 있다는 것이 조병화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 중심 책임 윤리'는 동아일보 1955년 6월 12일자 「아버지의 임무」라는 기사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중요한 책임중 하나인 자녀가정교육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자녀교육 담당자인 어머니를, 남편인 자신에게 복종해야 할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녀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로서 대우해야 하며

둘째, 아버지는 일상에서 자녀들을 가까이 하여

아내와 자녀 교육에 공동의 참여자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셋째,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방침이 일치해야 하며

넷째, 아버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1950년대 이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윤리 담론은, 가족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慈愛 문제 가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녀교육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의 교육,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담당한 교사로서 아내를 대우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 내용들이 담론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 담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가 혈연적 자애 중심의 윤리에서 자녀에 대한 사회적 부모 윤리인 교육책임론 중심으로 바뀌면서 1950년대부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윤리 담론도 동거적 효 중심으로부터 정서적 효 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다.

천륜적인 동거적 효 중심으로부터 분가적이고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의 심정적 효 중심으로 담론 내용을 바꿔 한 가장 직접적 요인은 효의 실천자인 자녀를 국가 사회에서 당시 세계적 사조였던 인구 억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 한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유교적 인간관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출생은 그 자체가 절대 선이며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대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수를 바라봄으로써 무계획적인 출산을 경제적 사회적 악으로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아 제한은 사회적 핵심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산아제한을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가 아니라 천륜과 인륜이 함께 맞닿은 관계가 된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천륜관계에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과 인륜이 혼재된 관계가 된다. 예컨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출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효를 천륜적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인륜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6·25동란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이슈는 산아 제한을 둘러싼 전통적인 유교적 반대 입장과 서구의 인구 경제학적인 긍정적 입장의 대립이었다. 이 문제는 1950년대 중반 지식인 또는 전문가들 사이의 제한적 담론인 잠복기를 거쳐 1950년대 말 가족 계획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산아 제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러한 공론화는 1961년 5·16 구테타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 강력히 추진하면서부터 「가족 계획」으로 이름을 고친 산아제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찬반의 상태를 종식하고 가족계획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확립에 만 집중되었다. 단지 반대가 있었다면 유교적 보수 계층과 인간 생명의 존엄을 교리로 하고 있는 기독교계에서의 반대 입장만 형식적으로 표명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가족계획 다시 말하여 산아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은, 하늘이 주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논거(유교적 입장)나 산아 제한은 인공중절 수술을 일반화 시키고 수태 그 자체가 생명체이므로 인공 중절 수술은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거(기독교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긍정적 입장은, 책임지고 기를 수 없는 자녀를 낳는 것은 가정은 물론 사회적 악이라는 점과 산아제한은 불임수술이나 유산을 통한 인구 억제책이나 가족계획은,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가족계획이란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수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낳아서 훌륭하게 교육하여 부모와 자녀가 모두 즐거운

가정생활을 이룩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는 것이다(강준상, 「가정생활」, 1962. 7, pp.40-41). 그러나 군사쿠데타 이후의 가족계획은 인구증가 억제방법으로 취해진 것이어서 문화운동으로서의 가족계획이 아니라 인구 억제책으로 취해진 산아제한이었다(변시민, 「가정생활」, 1962. 7, pp.44-45).

산아제한, 즉 인구의 억제정책 시행의 과정속에서 전개된 50년대 이후 60년대 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요약하면:

- ① 천륜의 관점에서 효문제를 중심으로 한 담론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기 자식중 자기 자식을 먼저 고려한 후 부모를 공경한다는 현실론적 자녀중심의 효에 관한 담론으로 변모되었으며
- ② 그 결과, 효는 천륜적 영역으로부터 인륜적 영역으로 변화되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담론은 동거적 절대복종적 윤리가 아니라 분가적 상대적 그리고 자기 주장적인 심정적 효윤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 ③ 조선(祖先) 중심의 효, 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효가 아니라 살아계신 양친을 중심으로 한 효가 부모-자녀간 윤리담론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하겠다.

2) 사회적 윤리실상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실상

6·25동란이후 우리나라 가정의 중심은 부모로부터 자녀로 옮겨진 것이 가장 큰 변혁중 하나이다. 그러함에도 이 시기는 구세대가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존재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유습은 사회 현실에서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그대로 상존하고 있었다.

과거보다는 교육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딸보다 아들을 우선시 함으로써 가난한 일반 민중사회에서 여자형제는 남자형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으로, 남자형제중 차남은 형의 희생이 되었다. 여자 아이들은 국민학교만 마치면 집을 떠나 공장에서 돈을 벌어 집에 남은 남동생이나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차남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립하기 위하여 어린

나이에 집을 나서는 예가 허다하였다.

자녀에 대한 이와 같은 개방성은 전쟁 피난시절에 절감한 경제적 중요성과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후 사회구조가 부모자녀관계에 초래한 변화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장남과 부모로만 구성되는 최소단위를 지향, 차남의 분가를 일반화 시켰으며 가정경제의 관점에서 딸의 사회진출은 보편화되는 상황으로까지 변모되었던 것이다.

부모들은 가문이나 개인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걸었으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계층의 관심이 경제에 집중됨에 따라 이시기 가정윤리문제는 사회적으로 부차적 영역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61년 5·16이후 전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사회 전체계는 경제발전에 충동원 되었고 새마을 운동은 과거 유습의 정신적 개조를 지향, 모든 것을 영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것이다.

그 결과, 전후 복구와 60년대 경제개발은 가정으로부터 해방된 젊은 여성과 장남이외 젊은이들의 산업인력화와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에 의해서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젊은 여성인력과 남성층이 전통적 가족윤리에 그대로 폐쇄되어 있었다면, 60년대 5개년 경제개발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점에서 본다면 6·25가 가져온 가정의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과정에서 아버지는 노동의 주체로, 어머니는 가정의 관리자로 분화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계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적 산업화 가족관계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여, 미혼시 직업을 가졌던 여성도 결혼하면 가사와 자녀양육에만 전념하여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가정관리라는 가족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편은 가정경제의 주수입원으로만 기능하고 아내가 돈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식의 가정경제는 아버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아내의 가정내 지위와 권한을 크게 높였으며, 이러한 가정경제 유형은 50-60년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경제적 부양의무로만 집중시켜 그 밖의 대상들은 등한

시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1950년 6·25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이시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첫째, 전쟁의 피난체험과 봉건적 사회체계 및 산업시설의 황폐화는 개인들에게 생존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게 하였고, 이러한 전후 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책임 또한 경제 또는 물질적 형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둘째, 아버지는 집밖에서 임근노동에 전념하고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실제에 있어 아버지는 형식성에 머물고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또는 윤리는 애정적 또는 물질적 성격으로 변모 되었으며, 남성적 윤리가 아닌 여성적 윤리로 변모됨에 따라 책임 보다는 배품의 윤리가 되어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부모를 인식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여 어린 자녀는 자신을 왕으로, 부모를 자신의 시중드는 하인 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어머니만을 통한 부모-자녀간 윤리의 여성화는 1970년대 이후 윤리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실상

가정경제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뒷바라지를 다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한 윤리를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시기 자녀가 갖게 된 효의 내용에 대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의 내용이 물질로 구성되기 시작함으로서,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력을 상실한 노부모는 부담으로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실제로, 천륜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구

타하고, 이에 격분한 아버지가 아들을 인륜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에 고발하고 있는 사건을 들 수 있다. 근래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아비를 구타한 패륜아 사건을 보도한 한국일보 1954년 11월 8일자 「아들은 아비를 구타-패륜 또 하나」라는 기사가 그 예인데, 사건 내용을 보면:

「아비를 쳐서 전치 4주일의 중상을 입힌 패륜 아들을 걸어 고소를 제기한 근래 보기 드문 가정풍파가 빚은 상해사건. 즉 지난 30일(10월 30일) 하오 3시 반경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사는 이씨의 차남으로 CAC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이근수(27세)는 부친과 익힌 원한 끝에 부친을 무수히 구타, 좌측 제 7늑골 골절과 안면 타박상 등 전치 4주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에 분개한 이씨는 즉시 아들을 상대로 경찰청에 상해고소를 제기하여……」

70년대이후 사회의 배지(培地) 역할을 담당했던 50-60년대는 실제에 있어 가정이 자녀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였다는 조연현(『가정생활』, 1961. 9, P 15)의 언급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운동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가 어머니날에 대한 사회운동이다.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어머니날은 사회운동의 한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어머니날 행사의 의미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이제까지의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정관리권이 어머니에게로 이전되고 아버지의 가장권이 형식성과 가정경제 수입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날이 없는 어머니날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여성이 어머니가 된 후에는 사는 것도 어미니로서 살고 죽는 것도 어미니로서 죽는다」(최이순, 동아일보, 1957. 5. 8, 「어머니날에 조음하여」)는 언급에 암축되어 있듯이 부모는 배품적 윤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이 자녀에게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관계를 상보적(相補的) 관계로 인식하게 하지 않고 어머니만을 강조한 자녀 중심의 가족제도는 자녀를 위해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배태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효의식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둘째, 어린이날에 대한 사회운동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사회적, 국가적 또는 가정에서의 의미와 그들을 위한 현재의 문제점 등을 탐색하여 어린이들을 미래사회의 훌륭한 주인공으로 키우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 그러나 50-60년대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모들이 들어주는 날, 또는 사회적으로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념행사를 하는 날로 변질되어 어린이들은 부모를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행사를 전락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운동이다.

1960년대초 국가재전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경제개발 정책 중 하나로 강력히 추진한 것이 가족계획 사업이다. 이 가족계획 사업은 인간존재를 수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사업이며, 「존재와 수」라는 복합적 개념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사회적 관점이다. 이 경우 인간존재는 절대적 선으로부터 상대적 선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인간존재의 상대적 선이 절대적 선으로 구성된 「가족」집단을 통해 추구됨으로서 부모와 자녀관계는 천륜적 관계가 아니라 인륜적 관계의 한 특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녀중심 가족형태로,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이나 사회의 경제적 여유 즉 근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가족계획에 대한 이 두 가지 효과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이 긍정적 효과가 부모와 자녀간 관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무제한적 인 물질적 배품,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모두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효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약화되게 되었다.

6·25동란이후 사회·경제적 제조건과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변질로 인하여 50-60년대 나타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실상은:

첫째는 부모에 대한 효의 급격한 약화이며

둘째는 효의 내용이 물질화되기 시작하여 경제적 부양을 효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195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는 6·25라는 유사이래 최초의 근대전쟁과 이로 인해 사회 각 부문에 남아 있던 전통적 봉건 잔재가 해체되고 명실상부하게 근대 서구체제로 교체됨으로써 역사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사회 시간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족윤리의 변동은 우리나라 가족윤리의 내면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던 유교적 가족윤리가 이질적 가치관의 대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도전과 응진과정을 생략한 채 서구가족윤리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란 인륜(人倫)보다 우선하는 천륜(天倫)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일」의 기축원리인 합리성보다 「생명체」의 기축원리인 윤리성을 더 중시하는 천륜공동체(天倫共同體)이다. 그런데 과학무기를 수단으로 한 근대 전쟁은 윤리적 가치보다 실용적 합리성을 정당화시켰고, 이와 같은 전쟁의 파괴성과 창조성은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를 인문적 가치에서 실용적 경제가치로 이전시켜 사회 전부분을 개인중심의 실용성과 합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관이 천륜의 공동체로부터 인륜공동체로 변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윤리는 효라는 중심가치로부터 상호존중이라는 평등가치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 시기의 가족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실상은 어떠했는가?

1. 부부윤리

1) 사회적 담론

- (1) 가정에서의 여성억압은 부차적 과제로, 「가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이 담론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였으며
- (2)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탈출이 곧 여성해방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고 보아 이에 대한 비판하고 있으며, 반면 여
성들은 사회 전반에 부부윤리에 대한 봉건적
잔재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 철저한 여성해
방을 강조하고 있고

- (3) 남성들은, 여성들이 서구적 사치와 허영을 현
대화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유로이 집밖에
나들아 다니는 것을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가정으로
부터 사회로의 해방」이 아니라 「가정내에서
의 여성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 (4) 반면에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여성살림주권론,
남편존재의 재인식을 통한 가정경제의 공동
책임론, 정치적 민주주의와 가정민주주의간의
관계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부부평등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 (5)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
정내에서 실질적인 부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 경제적 능력을 가정내 주권으로
담론하고 있다.
- (6) 부부간 상호불간섭과 경제적 실권(實權)의
공유화를 부부평등으로 인식했던 일반 민중
적 담론에 반발하여 일부 여성 지식인들은
「자아발전」에 입각한 부부관, 즉 이상적 부부
관계란 서로 상대방의 자아발전을 도와 주는
데 있다는 개인화된 부부상을 담론으로 거론
하고 있다.

2) 사회적 윤리 실상

첫째, 6·25전쟁기간중 참전으로 인한 일시적 또
는 사망으로 인한 영구적 남편부재로 인하여 가족
부양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전후(前後)부
터 부(婦)의 가족내 지배권이 부(夫)의 지배권과 동
등해지거나 남편이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
성이 실질적 가장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둘째, 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이 해이해지고 서구문
물이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부간 정조의무가 절

대적 윤리에서 상대적 윤리로 변모되어 가기 시작
했고

셋째, 서구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급격히 유입되
고 교육이 대중화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공허에 의하여 향락주의와 사치가 만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억압장치가 소멸되자 이시
기 여성들은 부부윤리를 가정으로부터의 여성해방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일반 남성들
은 부부윤리를 가정내 인격평등의 관점에서 바라
보았고

넷째, 도시지역과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서
구적 부부평등 윤리가 확산되어 간 데 반하여 농촌
지역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전통적 부부윤
리가 상존하였으며, 청소년 젊은층의 경우는 농촌과
도시,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부부평등을
선호하였는데, 이경우 특이한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
랑의 표현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2. 부모-자녀간 윤리

1) 사회적 담론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 담론

1950년대 이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윤리담론은,
가족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것
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윤
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자애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녀교육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인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의 교육,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을
담당한 교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 내
용들이 담론을 이루고 있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 담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가 혈연적 자애중심의
윤리에서 자녀에 대한 사회적 부모윤리인 교육책임
론 중심으로 바뀌면서 1950년대부터 부모에 대한 자

녀의 윤리담론도 동거적 효중심으로부터 정서적 분가적 효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다.

천륜적인 동거적 효중심으로부터 분가적(分家的)이고 사회경제적 조건속에서 심정적 효중심으로 담론내용을 바꿔 한 가장 직접적 요인은 효의 실천자인 자녀를 국가사회에서 당시 세계사조였던 인구억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유교적 인간관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 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출생은 그 자체가 절대선이며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대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가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수를 바라봄으로써 무계획적인 출산을 경제적 사회적 악으로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아제한은 사회적 핵심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산아제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가 아니라 천륜과 인륜이 함께 맞닿은 관계가 된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천륜관계에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과 인륜이 혼재된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속에서 논의된 담론은:

첫째, 천륜의 관점에서 효문제를 중심으로 한 담론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기 자식중 자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祖先)적 효를 논의한 담론이었으며

둘째, 그 결과 효는 천륜의 영역으로부터 인륜의 영역으로 변화되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담론은 동거적 절대 복종적 윤리가 아니라 분가적·상대적 그리고 자기 주장적인 심정적 효윤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셋째, 조선(祖先) 중심의 효 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효가 아니라 살아계신 양친을 중심으로 한 효가 담론의 주요 내용이었다.

2) 사회적 윤리 실상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 실상

첫째, 전쟁의 피난체험과 봉건적 사회체계 및 산업시설의 황폐화는 개인들에게 생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였고, 이러한 전후 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책임 또한 경제 또는 물질적 형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둘째, 아버지는 집밖에서 임금노동에 전념하고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실제에 있어 아버지는 형식성에 머물고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또는 윤리는 예정적 또는 물질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으며 남성적 윤리가 아닌 여성적 윤리로 변모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는 책임보다는 일방적 배품의 윤리가 되었다.

(2)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 실상

이시기 가족윤리중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부분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윤리부분이라 하겠다. 경제적 합리성과 실용성의 사고가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시기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윤리 실상은:

첫째, 효의 중요성과 관심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둘째, 효의 내용이 물질화되기 시작하여 경제적 부양을 효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국일보
- 경향신문

2. 2차 자료

A. 저서 및 논문

국내

〈저서〉

- 1) 권오호, 『부인소학』, 도서출판 다물, 1994.
- 2)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85
- 3) 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 한국사회학연구소, 1987.
 - 4) 안 림, 『역사와 경제』, 성대출판부, 1981.
 - 5) 이광규, 『한국 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1984.
 - 6) 이인직, 『설중매』, 『정수(精隨) 한국문학전집』, 제3권, 문호사, 1967.
 - 7) 최재율,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8.
 <논문>
 - 1) 고정자, '미혼남성의 가족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93, 1983.
 - 2) 꽈정희, 「한국 가정윤리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3) 신효식, 류점숙, '도시여성의 가족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논문집』, 제 31집, 1986.
 - 4) 이강규, '가정에서의 윤리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2.
 - 5) 이부영,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가족윤리의 문제', 『철학과 현실』, 1994, 철학문화연구소.
 - 6) 이은창, '한국의 부부상', 『여성문제연구』 8, 효성여대, 1979.
 - 7) 이정덕, '우리나라 전통적 부녀의 현대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17권 1호, 1979.
 - 8)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 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까치, 1990.
 - 9) 전혜린, '이상적 부부상', 『사회와 가정』, 현대인 강좌 5, 박우사, 1962.
 - 10) 정병조, '바람직한 가정윤리', 한국가정문화 대토론회 발표논문, 문화부주최, 프레스센터, 1992.
 - 11) 조혜정,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의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1986.
 - 12) 지교현, '가정의 윤리적 특성과 사회·교육적 기능', 『개인과 국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13) _____, '한국인의 가족윤리의식과 그 행태-청주, 청원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청주교대논문집』 제 9집, 1973.
 - 14) 진교훈, '윤리와 가치관', 『한국인의 윤리사상』, 울곡사상연구소, 1992.
 - 15) 최재율, '현대가족의 가족문제와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 논문집』 제 28집, 1983.
- B. 일반잡지
- 1) 가정의 벗, '가정과 어머니의 정신건강', 「가정의 벗」, 1969년 7월호.
 - 2) 강준상, '우리의 현실과 가족계획문제', 「가정생활」, 1962년 7월호.
 - 3) 김윤성, '나의 자화적 한국 남성상', 「여상」, 1965년 2월호.
 - 4) 나절로, '주부허영의 비극', 「여원」, 1956년 4월호.
 - 5) 노라·노, '남성본위의 불평이다', 「여원」, 1960년 3월호.
 - 6) 노천명, '연애는 반드시 결혼의 전제여야 하나', 「여원」, 1956년 4월호.
 - 7) 박빈, '이혼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명랑」, 1961년 3월호.
 - 8) 박순천, '가장의 의견을 따르지 말자', 「여원」, 1960년 8월호.
 - 9) 백세명, '백년전 한국에도 여권운동이 있었다', 「여원」, 1958년 1월호.
 - 10) 변시민, '올바른 가족계획은 실천하는 생활태도로', 「가정생활」, 1962년 7월호.
 - 11) 부부살롱, '남편의 존재를 다시 인식해야 할 시대', 「가정생활」, 1961년 8월호.
 - 12) 성인기, '흔기를 놓친 남녀에게 충고한다', 「여원」, 1958년 1월호.
 - 13) 손소희, '생활의 창-맑고 아름다운 분위기', 「가정생활」, 1963년 4월호.
 - 14) 양주동, '여성의 남성화', 「여원」, 1958년 1월호.
 - 15) 여원, '성의식 특별조사', 「여원」, 1961년 3월호.
 - 16) 이상백, '가족제도의 폐단', 「가정생활」, 1961년 9월호.
 - 17) 이태영, '남성의 특권의식은 봉괴된다', 「여상」, 1964년 6월호.
 - 18) _____, '쟁취해야 할 여성의 법적 지위', 「여상」, 1965년 1월호.

- 19) 이혜영, '고독의 벼랑에서 50년', 「가정생활」, 1963년 2월호.
- 20) 이희승, '꿈처럼 늙은 금슬(琴瑟)', 「여원」, 1960년 7월호.
- 21) 정도선, '한국여성에 대한 나의 불평 불만', 「여원」, 1960년 3월호.
- 22) 정일형, '세상에선 나를 훼미니스트라 하는데...', 「여원」, 1958년 3월호.
- 23) 조경희, '가정생활의 재건은 이렇게', 「가정생활」, 1961년 8월호.
- 24) 조병화, '애매한 아버지의 존재', 「가정생활」, 1963년 1월호.
- 25) 조연현, '가족제도는 이렇게 고치자', 「가정생활」, 1961년 9월호.
- 26) 최신해, '남편의 신경질', 「여원」, 1958년 9월호.
- 27) 특집, '총각 덤핑시대는 오다', 「명랑」, 1959년 12월호.

국외

〈저서〉

- 1) Berger, Brigitte and Berger, Peter(1983) *The War over the Family*, London, Hutchinson.
- 2) McNay, Marie and Pond, Chris (1980) *Low Pay and Family Poverty*, London, Study Commission on the Family.
- 3) Morgan, D. H. J. (1975) *Social Theory and the Famil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4) Roberts, Elizabeth (1984) *A Woman's Place*, Oxford, Blackwell.
- 5) Rosser, C. and Harris, C. C. (1965) *The Family*

and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6) Sanday, Peggy Reeves (1981) *Female Power and Male Domi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1) Litwak, Eugene (1965) 'Extended Kin Relations in an Industrial Democratic Society', in Shanas, E. and Streib, G.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2) Lowe, Nigel V. (1982) 'The Legal Status of Fathers : Past and Present', in McKee, and O'Brien M. (eds), *The Father Figure*, London, Tavistock.
- 3) Morgan, D. H. J. (1979) 'New Directions in Family Research and Theory',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28, 3-18.
- 4) Murdock, George p.(1968) 'The Universality of the Nuclear Family', in Bell, N. W. and Vogel, E. F. (eds),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rev. ed., New York, Free Press.
- 5) Parsons, Talcott (1971) 'The Normal American Family', in Adams, B. N. and Weirath, T., *Readings on the Sociology of the Family*,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
- 6) Smith, Dorothy (1975) 'Women, the Family and Corporate Capitalism',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20, 55-90.